

##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### □ 민원 제목 :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관련 처리 불만

### □ 신청 취지

-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 민원에 대하여 ○○구 ○○○○과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해 읍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읍부즈만이 직접 조사·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

### □ 사실관계

- 민원인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 민원 (1차: 2022. 9. 22., 2차: 2022. 11. 4.)에 대하여, CCTV가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의 무단 투기의 정도가 개선되면 이전 설치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과 그 외 2개항에 대한 민원도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읍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읍부즈만이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

### □ 판단 및 결론

- 읍부즈만은 ○○구 ○○○○과 주무관들과 협의 및 민원 현장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(의견표명)
  - 민원인이 제기한 1번 사항(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)은 2022. 11. 8.경 해당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확인함
  - 민원인 제기한 2번 CCTV 설치 요청 건은 2022.12.27.자로 민원

인 요청 지역인 000-00 지역에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023년 1월 20일 전후 이동식 CCTV가 설치될 예정임

- 민원인의 3번 질문사항(1번과 2번에 대한 업무절차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 요구)은 1, 2번의 민원처리로 해소된 바 사료됨